

- ① **신환** :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(30일 기준)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
- ② **재발** :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상기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
- ③ **초치료실패** : 과거 치료에 실패(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)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
- ④ **중단후재등록** :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,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
- ⑤ **전입** :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,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장소를 옮겨 내소(원)한 환자
- ⑥ **만성배균자** : 재치료(2차 결핵약제 포함)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환자
- ⑦ **기타** : 상기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A15 | ☉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|
| A15.0 | 배양 유무에 관계없이 가래 현미경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|
| A15.1 | 배양으로만 확인된 폐결핵 |
| A15.2 |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|
| A15.3 |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|
| A15.4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가슴내 림프절의 결핵 |
| A15.5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후두,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|
| A15.6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결핵성 가슴막염 |
| A15.7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초기 호흡기 결핵 |
| A15.8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기타 호흡기 결핵 |
| A15.9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|
| A16 | ☉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|
| A16.0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폐결핵 |
| A16.1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 |
| A16.2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폐결핵 |
| A16.3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가슴내 림프절 결핵 |
| A16.4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후두,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|
| A16.5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결핵성 가슴막염 |
| A16.7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초기 호흡기 결핵 |
| A16.8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기타 호흡기 결핵 |
| A16.9 |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|
| A17 | ☉ 신경계통의 결핵 |
| A17.0 | 결핵성 수막염 |
| A17.1 | 수막의 결핵증 |
| A17.8 |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|
| A17.9 | 상세불명의 신경계통의 결핵 |
| A18 | ☉ 기타 장기의 결핵 |
| A18.0 | 뼈 및 관절의 결핵 |
| A18.1 | 비뇨생식기계통의 결핵 |
| A18.2 | 결핵성 말초 림프절병증 |
| A18.3 | 창자, 복막 및 창자사이막(장간막)의 결핵 |
| A18.4 |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결핵 |
| A18.5 | 눈의 결핵 |
| A18.6 | 귀의 결핵 |
| A18.7 | 부신의 결핵 |
| A18.8 | 기타 명시된 장기의 결핵 |
| A19 | ☉ 증살 결핵 |
| A19.0 | 하나로 명시된 부위의 급성 증살 결핵 |
| A19.1 | 여러 부위의 급성 증살 결핵 |
| A19.2 | 상세불명의 급성 증살 결핵 |
| A19.8 | 기타 증살 결핵 |
| A19.9 | 상세불명의 증살 결핵 |

결핵정보관리 보고서(환자신고용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일자 | □□□□년□□월□□일 | 신고구분 | □보건소환자 □병의원 환자 |
| 보건소코드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| |
| 의료기관코드 | □□□□□□□□ | | |
| 시도구분 | [] | 관리번호 | [] |
| 담당의 | [] | | |
| 환자성명 | [] | | |
| 주민번호 | □□□□□□-□□□□□□□□ | 성 별 | □남자 □여자 |
| 나이 | 만[]세 | 직 업 | [] |
| 국적 | [](입국날짜)□□□□년□□월□□일 | | |
| 주소 | 우편번호□□□□-□□□□ □주소불명 | | |
| 전화번호 | [- -] | 휴대폰번호 | [- -] |
| 결핵과거치료력 | □유 □무 □모름 | 치료기간 | □모름 □1개월 미만 □1개월 이상 |
| 과거치료횟수 | □모름 □1회 □1회 이상 | | |
| BCG반흔 | □유 □무 | BCG접종법 | □피내 □경피 □불명 |
| 객담도말검사 | □양성 □음성 □불명 □미검 | 객담배양검사 | □양성 □음성 □불명 □미검 □검사중 |
| 객담이외검체 도말검사 | □양성 □음성 □불명 □미검 | 객담이외검체 도말검사 | □양성 □음성 □불명 □미검 □검사중 |
| 조직검사 | □양성 □음성 □불명 □미검 | 기타검사 | □양성 □음성 □불명 □미검 |
| 방사선사진 | □정상 □결핵의심 □불명 □미검 □기타 | 투베르쿨린검사 | □정결크기 []mm □미검 |
| 1. 질병코드 | A□□.□(A15.0 - A19.9 중 선택) | | |
| 1-1. 질병코드 | □U88.0 □U88.1 *내성결핵시 추가입력 | | |
| 환자구분 | □신환 □재발 □초치료실패 □중단후 재등록 □전입 □만성배균자 □기타 | 추구관리 | □동의 □동의안함 □(초기화) |
| 치료시작 일자 | 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 | 추구관리동의일 | 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 |
| 치료약제 | □INH □RFP □PZA □EMB □SM □PTA □CS □PAS □OLX □KM □TUM □AK □기타[] | | |
| 치료종결일자 | 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 □치료결과초기화 | | |
| 치료결과 및 퇴료구분 | □완치 □완료(판정불가) □실패 □중단 □전출 □결핵관련사망 □기타사망 □진단변경 □기타 | | |

질병관리본부

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(녹번동 5번지)
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
 TEL: 02-380-2914, 02-383-2914, FAX: 02-380-1418
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(TBnet): <http://tbnet.cdc.go.kr>



정확한 결핵환자 신고는
결핵 퇴치의 밑거름입니다.



TBnet(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)
<http://tbnet.cdc.go.kr>

TBnet 콜센터
 02-380-2914 / 02-383-2914

■ 결핵환자의 신고 및 보고



[신고대상] 환자 및 의사환자

- 1)환자 : 결핵의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, 객담, 혈액, 소변, 뇌척수액, 조직 등에서 세균학적으로 결핵균이 확인된 자
 - 2)의사환자 : 임상적, 영상의학적,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, 세균학적으로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은 자
- ※ 예방화학적료자, NTM, 요관찰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.

[신고기한] 결핵환자를 진단한 후 7일 이내

[신고방법]

- 1) 인터넷 직접 신고(<http://tbnet.cdc.go.kr>)
- 2)[결핵정보관리보고서]작성 후, 우편, 팩스를 이용하여 관할 보건소로 송부

[법적근거]

전염병예방법 제4조(의사등의 신고)

결핵예방법 제20조(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)

- ※ 신고의무 위반시에는 전염병예방법 제56조와 결핵예방법 제42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
[참고사항]

- 결핵환자를 진단한 경우뿐 아니라 치료하는 경우에도 신고
- 환자 구분이 같은 환자는 1년에 1회만 신고
 - 단, 환자 구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환자 구분에 따라 재신고
- 폐결핵과 폐외결핵으로 동시에 진단된 환자는 폐결핵 환자로 1회만 신고
- 보험청구시 사용하는 표준질병코드(A15.0~A19.9) 기입, 내성결핵 환자인 경우 U88.0, U88.1 추가기입
- 검사결과가 양성과 음성이 모두 나올 경우 양성 결과가 우선, 양성인 검사결과가 여러개 나올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질병코드 기입

| 우선순위 | 질병코드 | 검사결과 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---|
| | | 도말 | 배양 | 조직 | 기타 | X-RAY |
| 1 | A15.0 | 양성 | | | | 결핵의심 |
| 2 | A15.1 | | 양성 | | | 결핵의심 |
| 3 | A15.2 | | | 양성 | | 결핵의심 |
| 4 | A15.3 | | | | 양성 | 결핵의심 |
| | A16.0 | 음성 | 음성 | 음성 | 음성 | 결핵의심 |
| | A16.1 | 미검 | 미검 | 미검 | 미검 | 결핵의심 |
| | A16.2 | 불명 | 불명 | 불명 | 불명 | 결핵의심 |

※ 미검:검사하지 않음
불명:검사하였으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함

■ 인터넷 직접신고요령



[접속] (<http://tbnet.cdc.go.kr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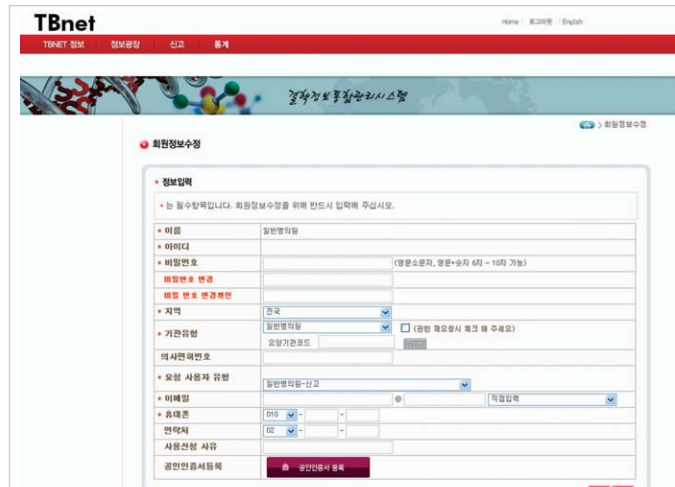


[회원가입 및 승인요청]

- 회원가입 클릭
- 회원정보 입력
- TBnet 콜센터로 승인요청 (02-380-2914, 02-383-29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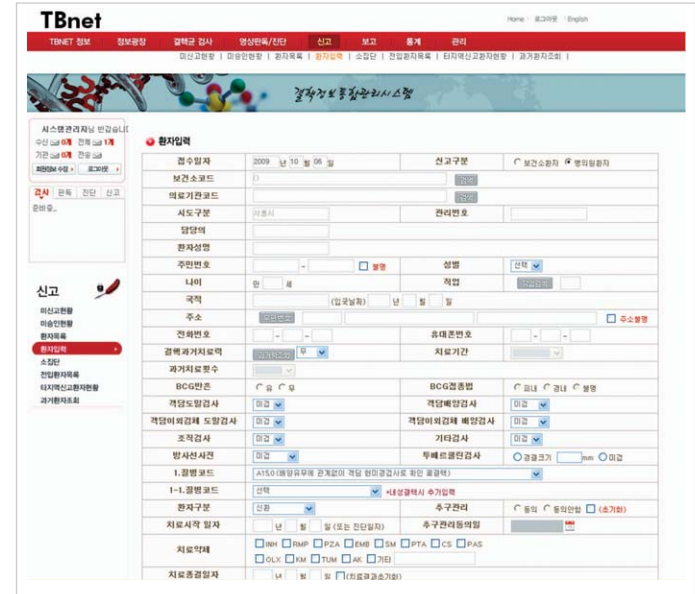
[공인인증서 등록]

- 회원정보수정 클릭
- 공인인증서 등록 클릭
- ※ 공인인증서는 법인, 개인, 개인/금융결제유, 공공기관용, 국방용 등 모든 공인인증서 사용가능



[환자 신고]

- 신고 클릭
- 환자 입력 클릭
- 환자 정보 입력



[치료결과입력]

- 치료종결 후, 치료종결일자 및 치료결과 입력

FAQ

- Q** 기존 KTBS를 사용했었는데 TBnet에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?
A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. 가입 시, 병원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기관코드나 병의원명 외의 사용자 이름과 ID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Q**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A 행정안전부 “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”에 의거하여 TBnet과 같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사용자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